

#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7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체육·문화·관광 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소 신설

## 2. 주요내용

- 사업소(4급)신설 : 시설관리센터
- 과 신설 : 체육시설관리과, 문화시설관리과
- 사업소 폐지 : 공공시설관리소, 조정경기장관리소
- 소관사무 : 체육·문화·관광 시설의 운영 관리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그밖의 사항
  - (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대상

##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 제3호부터 제1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2. 시설관리센터

- 가. 체육·문화·관광 시설의 운영 관리
- 나. 소관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
- 다. 청소년 수련원 시설물 관리
- 라. 택견전수관, 우륵당 시설물 유지관리
- 마. 문화회관, 여성문화회관 시설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도서관 관리, 운영에 관한 업무, 충주문학관 관리
- 사. 화장시설, 봉안당, 주덕공설묘지에 관한 사항
- 아. 박물관, 선사유적박물관, 무술박물관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- 자. 조정경기장 시설 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차. 그 밖에 소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## 사업소의 명칭·위치(제15조제2항 관련)

사업소명	위치
·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	· 충주시 으뜸로 21 (금릉동)
· 충주시시설관리센터	· 충주시 중원대로 3306 (호암동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문화복지국에 두는 과)① 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노인 장애인과, 여성청소년과, 문화예 술과, 체육진흥과, 관광과를 둔 다.</p> <p>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.</p> <p>1~5 (생략)</p> <p>6. <u>충주여성문화회관 시설, 관 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7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~11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문화복지국에 두는 과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~5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&lt;삭 제&gt;</p> <p>제 17조(소관사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 ~ 11. (삭제)</p> <p>12. 시설관리센터</p> <p>가. 체육·문화·관광 시설의 운영 관리</p> <p>나. 소관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</p> <p>다. 청소년 수련원 시설물 관리</p> <p>라. 택견전수관, 우륵당 시설물 유지 관리</p> <p>마. 문화회관, 여성문화회관 시설 관 리,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바. 도서관 관리, 운영에 관한 업무, <u>충주문학관 관리</u></p> <p>사. 화장시설, 봉안당, 주덕공설묘지에 관한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아. 박물관, 선사유적박물관, 무술박 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자. 조정경기장 시설 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p> <p>차. 그 밖에 소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</p>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  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 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  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3.23] [대통령령 제24425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(국장은 제외한다)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,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.  
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  
1. 국의 소관 업무(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)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

## 할 필요가 있을 것

2.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-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)의 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·보좌기관인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·국 또는 과·담당관으로 본다.

**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29>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사업소와 출장소 등)**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.
-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,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는 상수도·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·지구·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7.3>

⑤ 사업본부·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과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7.30, 2012.4.10>

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5급 이상(제13조제1항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있는 시·군·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)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

# **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** (제3조 관련)

## 1. 비용수반 요인

- 4급 증원 및 9급 감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
- 관련조문 : 충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30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(제2조)

## 2. 미첨부 근거규정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
## 3. 미첨부 사유

- 4급 1명 증원, 9급 4명 감원으로 비용수반요인 없음  
(연간 32,849천원 감)

※ 증가되는 인건비 : 94,759천원 × 1명 = 94,759천원

감소되는 인건비 : 31,902천원 × 4명 = 127,608천원

## 4. 작성자

-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